

의안번호	2205081
의 퇴 인	김민전 의원
회 답 일	2024.11.15.
추 계 번호	24C47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의2.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35조 (교육장의분장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어린이집,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안 제20조(관장사무) 안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육사무를 시·도 및 시·군·구의 관장사무에서 교육감의 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임¹⁾
 - 교육부는 '22년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추진을 포함하고, '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24년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보육사무를 이관받음
 - 개정안은 지방보육사무의 일원화를 위해 '보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안 제2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사무로 추가하며(안 제20조),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의 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부칙 제2조)을 규정함
 - －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안번호 제2205080호)에서는 교부금의 목적에 '보육기관'의 설치·경영을 추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정의에 '보육'을 추가하면서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 경비와 자체 편성 경비 및 관련 인건비 등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의안번호 제2205079호)에서는 교육감을 보육계획의 수립, 어린이집 확보·설치, 보육교직원 임면,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등 보육사무의 주체로 규정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의 주체가 됨에 따라 관련 사무 수행에 지출될 총 재정소요가 증가할지 여부와 그 규모,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가 소요 예산 규모 및 부담 주체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보육'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면서, '영유아 보육' 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하고, 교육장의 사무에 '어린이집' 관련 사무를 추가함
 - － 이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중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사항이며,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됨²⁾

1)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 다만, '24년 6월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24년) 말 확정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관장할 사무 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안번호 제2205080호)에 따라 개정안 공포 당시 시·도 및 시·군·구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비, 지역의 영유아보육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경비, 영유아 보육 사무의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예정³⁾임
 - 다만,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사무주체의 일원화와 동시에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재원만으로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움⁴⁾
 -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⁶⁾를 신설하여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할 예정이며, 추가 소요 예산 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2024년) 말 확정 예정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임⁷⁾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 규모 및 부담 주체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육사무의 주체가 된 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재정지출이 증가할지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한 예측에도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2024.06.27. 교육부) 참조

3)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 취합 기준 국고대응사업비 30,318억원과 특수보육시책사업비 18,838억원 등 총 4.6조원이 이관될 것으로 추정함

4)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관되는 보육사무의 수행 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관되더라도 실제 이체과정에 있어 전입·전출 희망자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총 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5) 보건복지부의 보육사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교육부 영유아 관련 인력은 교육부 내 재배치 11명, 보건복지부 이체 33명외에도 순증 17명이 있었던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배치 과정에서 인력 순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6) 교육부는 추진과정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법률명(2026년 시행 목표)을 변경할 계획(자료: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7)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2024.06.27. 교육부) 참조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